

[제 1353 호]

2017년 3월 3일(금)

고양시보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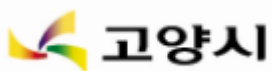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17-410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양시 공고 제2017-415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7-74호	도로명주소 고시	14
------------------	----------	----

Goyang City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경기도 및 타 시·군과 같이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여 의견 제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 각급 학교장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을 심의하는 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경기도의 시정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각급 학교에서 신청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함.(안 제5조제3항)
- 나.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위원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

하는 공무원” 을 추가함.(안 제7조제3항)

다. 교육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참석을 의무화한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함.(안 제11조제3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3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평생교육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 (031-8075-2282)
- 팩 스 : 031-8075-492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제11조제3항 중 “회의에는 반드시 출석하여”를 “회의에 출석하여”로, “답변하여야 한다.”를 “답변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평생교육과
입안자	담당과장 성명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팀장 성명	교육협력팀장 안영우
	담당자 성명·전화	남민현 (031-8075-2282)

현행	개정안
<p>제11조(기능) ① ~ ② (생략)</p> <p>③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는 <u>회의에는 반드시 출석하여</u>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u>답변하여야 한다.</u></p>	<p>제11조(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p> <p>.....</p> <p>..... <u>회의에 출석하여</u></p> <p>.....</p> <p>..... <u>답변할 수 있다.</u></p>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의 시행(2016.11.30.)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주요골자

가. 금고지정 평가결과의 공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5항)

나.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금고지정 평가항목을 정비함.(안 별표)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3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세정과 세외수입팀 (031-8075-2256)
- 팩 스 : 031-8075-490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
을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협력사업비)** ①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금고은행이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의 I 중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II의 제1호나목 중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한다.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1) 국외 평가기관	(6)
	2) 국내 평가기관	(4)
	※ 지역조합인 경우, 국내평가기관만으로 전체 평가(10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
	1) 총자본비율 (안전성)	(7)
	※ 지역조합인 경우,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
	3)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6)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
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세 정 과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김 홍 원
	팀 장 직위·성명	세외수입팀장 고 미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임 영 미 (031-8075-225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4조(금고지정 절차) ① ~ ④ (생략) <u><신설></u></p> <p>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 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상 · 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p> <p>제19조(협력 사업비) ①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u><신설></u></p> <p>② <u>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협력 사업비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u></p> <p><u><신설></u></p>	<p>제1조(목적)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p> <p>제14조(금고지정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시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u></p> <p>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u>금고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u>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협력사업비) ① ② <u>시장은 금고은행이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③ <u>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u> ④ <u>시장은 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세입 ·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관련)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관련)		
I. 총괄			I. 총괄		
항목	세부항목	배점	항목	세부항목	배점
계		100	계		100
		30			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가. (생략) - -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 지역조합인 경우, 순자본비율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u><신설></u>	(10) (6) (4) (20) (7) (7) (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가. (현행과 같음) 1) 2)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총자본비율 (.....) ※ 2) 3)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10) (6) (4) (20) (7) (7) (6)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생략) 가. (생략)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생략)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BIS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7점) (2) ~ (3) (생략) 2. ~ 5.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 (현행과 같음) ○ (1) 총자본비율 (.....) (2) ~ (3)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에 의거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35-42 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3. 3.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 번	종 전 주소	도 로 명 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 일	부 여 사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37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35-42 (주교동)	20170303	20090911	고유지명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84-3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139번길 43-10 (삼송동)	20170303	20100126	삼송로 시점에서 1390m에 위치한 도로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25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156번길 19-50 (현천동)	20170303	20100126	대덕로 시점에서 1560m에 위치한 도로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80-3, 80-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2길 45 (삼송동)	20170303	20120601	옛 지명 세수리마을과 솔개마을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2길 52 (삼송동)	20170303	20120601	옛 지명 세수리마을과 솔개마을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78-7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2길 54 (삼송동)	20170303	20120601	옛 지명 세수리마을과 솔개마을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80-51, 80-5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2길 47 (삼송동)	20170303	20120601	옛 지명 세수리마을과 솔개마을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413-3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원길 72 (지영동)	20170303	20090824	문봉동과 파주 대원리에서 한 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3-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33 (백석동)	20170303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764-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187-1 (성석동)	20170303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62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86-30 (구산동)	20170303	20081010	행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59-1, 32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63-47 (덕이동)	20170303	20090824	옛 철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77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이산포길 430-76 (구산동)	20170303	20090911	이산포IC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63-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13번길 64-90 (대화동)	20170303	20100126	송포로 시점에서 1130m에 위치한 도로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65-1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13번길 20-94 (대화동)	20170303	20100126	송포로 시점에서 1130m에 위치한 도로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55-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55-2, 254-9	경기도 고양시 산남로154번길 64	2017.03.03	관련지번 변경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멸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고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폐지 사유	멸실건물 고시일자	멸실건물 고시일자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2길 45		2017. 3. 3.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2. 7. 20	2012. 7. 20	삼송동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187-1		2017. 3. 3.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 7. 29	2011. 7. 29	성석동	